

제15장
분쟁해결

제15.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맥락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아래 정의가 적용된다.

- 가. 중재패널은 이 장의 제15.9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을 말한다.
- 나. 제소 당사국은 제15.9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 다. 분쟁 당사국의 대표란 당사국의 정부 부서나 기관 또는 그 밖의 정부 기관이 임명한 피고용인이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라. 피소 당사국은 이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 마. 협의 당사국은 제15.8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 또는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 바. 분쟁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 또는 피소 당사국을 말한다.

제15.2조
목적

이 장은 가능한 경우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당사국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3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어느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이 이 협정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여기는 경우의 분쟁에 대하여 또는 이 협정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차이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이 장은 비위반제소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15.4조

연락처

1. 분쟁이 발생하면,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개시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국들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지정한다.
2.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지정된 연락처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된다.

제15.5조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

1.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장은 당사국들이 당사국인 그 밖의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당사국들의 권리와 무관하다. 이 협정 및 당사국들이 당사국인 다른 국제 무역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무 또는 사안과 특정 조치가 불합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특정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이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하고 이 장 또는 다른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으면, 그 당사국은 그 특정 조치에 대하여 우선

선택된 분쟁해결 절차가 관할적 또는 절차적인 이유로 분쟁 중인 쟁점에 대하여 조사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밖의 분쟁해결 절차에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

3. 제2항의 목적상,

가.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제15.9조에 따라 당사국이 중재패널 설치를 요청한 때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 WTO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당사국이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6조에 따라 패널 설치를 요청한 때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조의 제2항과 무관하게, 분쟁 당사국¹이 이 장 또는 다른 분쟁해결 절차에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한 경우, 그 분쟁 당사국은 다른 분쟁해결 절차를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하나의 분쟁 해결 절차를 결정한다.

5.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다른 분쟁해결 절차에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기 전,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자국의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제15.6조

정보 요청

제15.7조 또는 제15.8조 각각에 따라 협의, 주선, 조정 및 중개 요청 전에,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의 접수일 후 20일 이내에 제출될 서면 응답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제15.7조

¹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 “분쟁 당사국”, “분쟁의 당사국”, “제3 당사국”, “피소 당사국”이라는 용어는 둘 이상의 당사국들이 분쟁에 관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된다.

주선, 조정 및 중개²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분쟁 당사국들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는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고 종료될 수 있다.
2.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관련된 절차 그리고 특히 이러한 절차 동안 분쟁 당사국들이 취한 입장은 비밀이며 비구속적이고 이 장에 따른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떠한 당사국의 권리와도 무관하다.
3.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이 장에서 규정된 중재패널 절차 내내 계속될 수 있다.
4. 분쟁 당사국들은 그들이 주선, 조정 및 중개에 회부한 모든 분쟁을 가능한 한 조속히 공동위원회에 통보한다. 공동위원회는 그러한 절차의 결과에 대해서도 통보받는다.
5.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당사국들의 권리와 무관하게, 분쟁 당사국들은 상호 합의한 경우 공동위원회에 분쟁의 우호적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는 그러한 요청의 접수 시 그에 맞춰 행동한다.

제15.8조

협의

1. 당사국들은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른다는 목적으로 신의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비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는 공동위원회에서 개최될 수 있다.

² 중개 절차 수행 시, 부속서 15-나 절차 규칙의 두 번째 규칙이 적용된다.

2. 문제가 되는 조치의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한 요청의 사유를 진술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당사국(이하 "협의 당사국들"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공동위원회에 통보된다.
3. 협의는 대면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한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개최될 수 있다.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면으로 개최되는 경우에 협의는,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4.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신속하게, 그러나 요청의 접수일 후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답변한다.
5. 협의는 협의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내에 개시된다. 부패성 상품에 대한 것을 포함한 긴급 사안에 대한 협의는 협의 요청의 접수로부터 15일 내에 개시된다.
6. 당사국들이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는 협의 요청일부터 60일 내에 또는 긴급 사안은 30일 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협의가 제5항과 제6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개최되지 않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이 장의 제15.9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8.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과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그 조치의 완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 당사국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9. 협의와 협의 중에 공개된 모든 정보와 당사국들이 취한 입장은 비밀로 유지된다. 당사국들은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 정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이 표시한 대로 취급한다.
10. 협의는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에 관련된 당사국들의 권리와 무관하다.

11. 협의에 관련된 협의 당사국들은 사안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공동위원회 의장에게 통보한다.

12.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요청의 접수일부터 제4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협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의가 제5항 또는 제6항 각각에 규정된 기간 내에 개최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국들이 협의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종결되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이르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국이 합의된 기간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협의를 구한 당사국은 제15.9조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9조 중재패널의 설치

1. 중재패널 설치 요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되는 서면 요청으로 이루어지며 제15.8조에 따라 협의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문제가 되는 조치를 적시하며 그러한 조치가 관련 대상 규정과 어떻게 불합치하는지 제시하고 제소의 사실적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그러한 규정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기재한다.

2. 둘 이상의 당사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하여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거나 요청이 둘 이상의 피소 당사국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단일 중재패널이 그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제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제15.10조 중재패널의 구성

1. 중재패널은 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2. 각 분쟁 당사국은 중재패널 설치 요청 접수일 후 30일 내에 개별적으로 한 명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3. 분쟁 당사국들이 각각의 중재인을 임명한 경우, 중재인들은 그들 중 두 번째 중재인의 임명으로부터 15일 내에 상호 합의로 세 번째 중재인을 지정한다. 어떠한 분쟁 당사국이 세 번째 중재인 지명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의가 있는 경우, 지명일부터 7일 내에 세 번째 중재인에 대한 이의와 그 사유를 다른 쪽 분쟁 당사국과 두 명의 중재인에게 통보한다.

4. 하나 이상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3항에 언급된 통보의 접수일부터 7일 내에 세 번째 중재인 지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분쟁의 당사국 요청에 따라 그러한 요청일부터 30일 내에 WTO 사무총장이 필요한 지명을 한다. WTO 사무총장이 이 항에 따라 필요한 지명을 할 수 없거나 이 협정 당사국의 국민인 경우,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5. 세 번째 중재인은 중재패널의 의장으로 임명된다. 의장은 분쟁 당사국들 중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며, 분쟁 당사국들 중 어느 당사국 내에도 통상적인 거주지가 없으며, 분쟁 당사국들 중 어느 당사국에 의해서도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당사국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의장은 또한 어떠한 자격으로도 이전에 그 분쟁을 다루지 않았어야 한다.

6.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체자는 원 중재인을 임명하기 위하여 따랐던 선정 절차에 따라 15일 내에 선정되며, 후임 중재인은 원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그러한 경우, 중재패널 절차는 이 기간 동안 중지되며 중재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후임 중재인이 자신의 직무를 시작한 때 재개된다.

7. 임명된 중재인은 법, 국제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기관 또는 정부와 제휴관계에 있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이해 충돌에 있거나 갖지 않는다. 중재인은 부속서 15-가에 규정된 중재패널 구성원

에 대한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8. 중재패널의 구성일은 의장이 임명된 날이다.

9. 분쟁 당사국들은 중재와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계속해서 알린다.

10.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안과 관련하여 제15.7조에 따라 당사국들에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한 인은 그 사안에서 패널위원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

제15.11조

중재패널의 절차

1.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 절차는 이 장과 부속서 15-나 절차 규칙에 따라 수행된다.

2. 이 조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재패널의 절차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분쟁 당사국들은 중재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최초 및 반박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나. 분쟁 당사국들은 중재패널이 개최하는 모든 심리에 초청을 받는다.

다. 중재패널에 제출되는 모든 입장 및 의견은 분쟁 당사국들에 이용 가능하다.

라.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심리는 비밀로 한다. 그리고

마. 중재패널은 분쟁 당사국들의 평등과 적법절차를 보장한다.

3. 분쟁 당사국이 아닌 제3당사국³은 분쟁 당사국들에 서면통보를 전달했을 때, 중재패널에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고 분쟁 당사국들의 서면 입장(부속서를 포함한다)을 받을 수 있으며 심리에 참석할 수 있고 구두진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4.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과정에서 공개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절차, 심리 및 심의, 최초 보고서 및 모든 서면입장은 비밀로 유지된다.

5. 중재패널 설치 요청 접수일부터 20일 내에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관련 대상 규정에 비추어 제15.9조에 따라 중재패널 설치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분쟁의 해결과 판정의 이행을 위하여 그 사유와 함께 법 및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며, 권고가 있을 경우 권고를 하는 것"

6. 분쟁 당사국들은 합의된 위임사항을 중재패널에 전달한다.

7. 중재패널의 기능은 중재패널의 설치 요청에 비추어,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그리고 이 협정에 대하여 검토 중인 조치의 적용가능성 및 합치성을 포함하여 그 분쟁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8.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정을 컨센서스로 내리며 컨센서스에 이를 수 없는 경우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어떠한 구성원도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별개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어느 구성원이 다수 또는 소수의 의견에 참여하였는지를 공개하지 않는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당사국은 분쟁 당사국들은 아닌, 이 협정의 하나 이상의 당사국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5.12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1.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언제든지 자신의 업무와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업무와 절차가 12개월을 초과하여 정지된 경우, 중재패널의 분쟁 심리 권한은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실효된다.
2. 분쟁 당사국들은 판정의 제출 전 언제든지 중재패널의 의장에게 공동으로 통보함으로써 중재패널 절차를 종료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의장은 그러한 종료를 공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것이다.

제15.13조 원만한 해결

1. 중재패널은 판정의 제출 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2. 패널 절차 동안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이르는 경우, 당사국들은 공동위원회와 패널 의장에게 그 해결책을 공동으로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에 따라, 패널은 종료된다.
3. 각 당사국은 합의된 기간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이행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국이 한 모든 조치를 합의된 기간의 만료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알린다.

제15.14조

중재패널 보고서

1. 중재패널은 사실과 분쟁 당사국들이 제기한 주장의 서술적 부분과 자신의 조사결과 및 판정을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중재패널 구성일부터 90일 이내에 분쟁 당사국들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최초 보고서의 접수부터 15일 내에, 분쟁의 당사국은 중재패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패널은 서면 의견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하여 당사국들과 추가 회의를 개최한다. 최초보고서에 대하여 분쟁 당사국들로부터 받은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패널은 최초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중재패널 구성일부터 135일 내에 분쟁 당사국들에 판정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2. 최초보고서에 대한 의견 접수를 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떠한 의견도 패널에 의하여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그 최초보고서는 패널의 판정으로 간주되며, 신속하게 분쟁 당사국들에 회람되고 공동위원회에 전달된다.
3. 부패성 농산물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중재패널은 중재패널 설치부터 60일 내에 판정을 제출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중재패널은 그 사건을 긴급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관한 예비 판정을 그 설치부터 10일 내에 내릴 수 있다.
4. 중재패널은 이 장의 규정에 합치되게 상이한 사안에 대하여 상이한 시기에 별도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5. 중재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 국제공법에 관한 해석 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된 이 협정의 규정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린다. 패널은 WTO 분쟁해결 기구가 채택한 보고서의 관련 해석을 또한 고려할 수 있지만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판정은 이 협정의 규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6. 최초보고서와 판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분쟁 당사국들의 입장과 주장의 요약

나. 사실의 조사결과, 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가능성 및 조사결과와 결론에 대한 근거

다. 문제가 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불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 또는 제15.11조(중재패널의 절차) 제5항에 규정된 위임사항에 요청된 그 밖의 판정, 그리고

마. 분쟁의 해결과 판정의 이행을 위한 권고가 있을 경우 권고

7. 패널 판정의 조사결과에는 최초보고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8. 판정은 분쟁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판정이 분쟁 당사국들에 제출되고 15일 후에, 비밀 정보의 보호를 저해함이 없이 공표될 수 있다.

제15.15조

판정의 준수

1. 중재패널의 판정은 분쟁 당사국들에 통보된 날부터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2. 피소 당사국은 판정의 결정을 신속히 준수한다. 즉시 준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그렇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판정의 제출부터 30일 내에 또는 긴급한 사건은 15일 내에,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의 당사국은 그 사건의 특정한 정황에 비추어 원 중재패널에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결정은 그 요청의 접수부터 30일 또는 긴급한 사건은 15일 내에 내려져야 할 것이다.

3. 판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에 대한 중재패널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4. 피소 당사국은 이 조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중재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국이 한 조치를 제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통보한다.
5. 피소 당사국이 이행 기한의 만료 전에 중재패널 판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통보하지 않거나 이 협정에 따른 판정을 달리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후 보다 늦지 않게,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6. 판정을 준수하는 조치의 존재나 그 조치가 판정과 합치하는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제15.16조(보상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따라 보상이 구해질 수 있거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가 적용될 수 있기 전에, 그러한 의견 불일치는 제소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동일한 중재패널이 결정한다. 중재패널은 이와 관련하여 중재패널의 재설치부터 45일 내에 판정을 내린다.

제15.16조 보상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1. 피소 당사국이 판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제15.15 조의 제2항에 따른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후 또는 준수하기 위하여 한 조치가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중재패널이 판단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개시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정지하고자 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그 정지가 발효될 예정인 날 15일 전에 피소 당사국에 통보한다.
2.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 가. 피소 당사국이 판정을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한 무효화 또는 침해와 동등한 수준

이다. 그리고

나. 이 협정에 따라 피소 당사국에 발생하는 양허로 제한된다.

3.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양허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할 때,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원칙을 적용한다.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에 불합치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그 동일 분야 또는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 구해야 할 것이다.⁴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밖의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정지할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선정할 때, 제소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최소한으로 저해하는 것들을 고려한다.

4.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일시적이며 판정에 판단된 조치의 관련 대상 규정과의 불합치가 제거되거나, 당사국들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또는 필요한 보상에 합의할 때까지만 적용된다.

5. 피소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통보의 접수부터 15일 내에 제소 당사국이 통보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수준이 이 협정과 불합치하다고 판단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과 동등한 것인지 여부 및 제안된 정지가 이 조의 제2항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원 중재패널에 판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판정은 요청의 접수부터 30일 내에 내려진다. 중재패널이 판정을 내릴 때까지 양허나 그 밖의 의무는 정지되지 않는다.

⁴ 이 항의 목적상, "분야"란 (1)상품에 대하여 모든 상품을 말한다. (2)서비스에 대하여 주요 분야를 확인하는 현재의 "서비스분야별분류목록"에 적시된 그러한 분야를 말한다.

6. 피소 당사국이 중재패널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한 조치를 제소 당사국에 통보한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가. 제15.16조에 따라 제소 당사국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권리를 행사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통보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종료한다. 또는

나. 필요한 보상에 합의한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소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보상의 적용을 종료할 수 있다.

7. 당사국들이 통보 접수일 후 30일 내에 제6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판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원 패널에 그 사안에 대한 조사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은 피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동시에 통보된다. 중재패널의 결정은 그 요청의 제출일 후 30일 이내에 당사국들에 통보된다. 제6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판정과 합치한다고 중재패널이 결정하는 경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또는 보상의 적용은 결정일 후 15일 이내에 종료된다. 통보된 조치가 판정의 부분적 준수만을 달성한다고 중재패널이 결정하는 경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또는 보상의 수준은 중재패널의 결정에 비추어 조정된다.

제15.17조

그 밖의 규정

1.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제15.15조 및 제15.16조에 언급된 중재패널은 판정을 내렸던 동일한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원 중재패널의 구성원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대체 중재인의 임명은 제15.10조에 따라 수행된다.

2. 분쟁해결 절차 과정에서 모든 서면입장, 요청, 통보 또는 그 밖의 문서와 전자문서는 분쟁 당사국들이 지정하고 통보한 각각의 연락처에 동시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장에 언급된 기간은 분쟁 당사국들의 상호 합의로 수정될 수 있다.
4. 중재패널이 이 장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패널은 분쟁 당사국들에 서면으로 알리고 추가로 필요한 시간의 추정치를 제공한다. 추가로 필요한 시간은 30일을 넘지 않아야 할 것이다.
5. 부속서 15-가에 규정된 행동 규범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된다.
6. 부속서 15-나에 규정된 절차 규칙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된다.
7. 분쟁 당사국들은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절차 규칙을 달리 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부속서 15-가
중재패널 구성원의 행동 규범

정의

1. 이 행동 규범에서

- 가. **구성원** 또는 **중재인**이란 분쟁해결 장의 제9조에 따라 유효하게 설치된 중재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 나. **후보자**란 분쟁해결 장의 제10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구성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고려되는 개인을 말한다.
- 다. **보조인**이란 구성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 라.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분쟁해결 장에 따른 중재패널 절차를 말한다.
- 마. **직원**이란 구성원에 대하여, 보조인을 제외하고 구성원의 지시와 통제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행동 규범

2. 모든 후보자와 구성원은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진실성과 공정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 및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공개 의무

3. 중재패널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선정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4. 후보자 또는 패널위원은 당사국들의 검토를 위하여 이 행동 규범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을 공동위원회에만 전달한다.

5. 일단 선정되면, 구성원은 이 부속서의 제3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구성원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구성원은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당사국들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에 알림으로써 공개한다.

중재인의 임무

6. 선정되는 경우, 중재인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정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7. 중재인은 절차에서 제기되고 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그러한 사안들만을 검토하며, 이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않는다.

8. 중재인은 자신의 보조인 및 직원이 이 행동 규범에 포함된 의무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중재인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의사소통에 관여하지 않는다.

구성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10.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대중의 요구,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

향을 받지 않는다.

11. 중재인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여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12. 중재인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재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3. 중재인은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자신의 행위, 판단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14.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관계를 맺거나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부속서 15-나

절차 규칙

기한 계산

1. 이 부속서에 따라 규정된 모든 기간은 그 기간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 날부터 달력상의 일로 계산된다.
2. 기간 계산의 목적상, 그러한 기간은 서면 통지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되기 시작한다. 그러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다음 첫번째 근무일까지 연장된다. 기간의 기산 동안 발생하는 공휴일이나 비근무일은 기간 계산 시 포함된다.
3. 어느 분쟁 당사국이 다른 쪽 분쟁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한 날과 다른 날 동일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러한 접수에 의존하여 계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러한 문서를 접수한 마지막 날부터 계산된다.

중개

1.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을 중개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들은 그러한 합의부터 10일 내에 공동으로 중개자를 임명할 것이다. 당사국들은 중개자 임명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공동 위원회의 의장에게 중개자를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개자는 분쟁 당사국들 중 어느 한 쪽의 국민도 아니다.
2. 중개자는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국들과 회의를 소집한다. 중개자는 회의 전 15일 이내에 분쟁 당사국들의 입장을 제공받을 것이고 분쟁 당사국들과 회의 후 4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중개자의 의견은 이 협정에 합치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중개자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 중개절차 및 중개 중에 공개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된다.

중재 개시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국들은 WTO 기준을 따르는 중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여, 분쟁 당사국들 또는 중재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러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30일 내에 중재패널과 회합한다.

중재패널의 운영

1. 중재패널의 의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중재패널은 행정적 및 절차적인 준비를 할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의장은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절차의 행정사항,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2. 심리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비디오 연결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3. 중재인만이 중재패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재패널은 그러한 심의에 패널의 보조인의 참석을 허락할 수 있다.
4. 모든 결정 및 판정의 초안 작성은 중재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5. 이 규칙이 다루지 않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는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아야 한다.

최초 서면 입장

1.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 설치일 후 25일 이내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장을 포함한 최초 서면 입장을 중재패널에 전달하고 동시에 피소 당사국에 사본을 보낸다.
2.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 입장을 접수한 날 후 25일 이내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장을 포함한 적어도 하나의 반박 서면입장을 중재패널에 전달하고 동시에 제소 당사국에 사본을 보낸다.

3. 제3자는 반박 입장의 접수 후 늦어도 15일 내에 자신의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4. 중재패널은 분쟁 당사국들의 의견을 접수한 후 분쟁 당사국들로부터 어떠한 추가 서면입장이 요구되는지 또는 제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러한 서면입장을 전달하는 기간을 정한다.

심리

1. 분쟁 당사국들은 중재패널의 심리 장소 및 일시에 대하여 합의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패널의 심리는 중재패널의 다른 구성원과 협의하여 중재패널의 의장이 결정한 장소 및 일시에서 수행된다. 다만, 그 장소는 제소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지 않아야 한다.
2. 의장은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분쟁 당사국들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중재패널은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심리를 열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중재패널은 분쟁 당사국들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4. 3명의 중재인은 모든 심리에 참석한다.
5. 다음의 인은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 가. 분쟁 당사국들의 대표
 - 나. 분쟁 당사국들의 자문인
 - 다. 행정 직원, 통역사 및 번역가, 그리고
 - 라. 중재인의 보조인
6. 분쟁 당사국의 대표와 자문인만이 중재패널에 발언할 수 있다.

7. 각 분쟁 당사국은 심리일의 최소 5일 전에 그 분쟁 당사국을 대신하여 심리에서 구두 변론이나 발언을 할 사람과 심리에 참석할 그 밖의 대표 또는 자문인의 명부를 전달한다.

8. 중재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변론

가. 제소 당사국의 변론

나. 피소 당사국의 변론

반박 변론

가. 피소 당사국의 반박 변론

나. 제소 당사국의 재반박 변론

9. 중재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심리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국 또는 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10. 중재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도록 주선하고, 속기록이 준비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속기록 사본을 분쟁 당사국들에 전달한다.

11. 심리일 후 15일 내에 각 분쟁 당사국은 심리 동안 발생했던 모든 사안에 응답하는 보충적 서면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서면 질문

1. 중재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라도 한쪽 또는 양 분쟁 당사국들에 서면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2. 중재패널이 서면 질문을 제시한 한쪽 분쟁 당사국은 다른 쪽 분쟁 당사국과 중재패널에 서면 답변의 사본을 전달한다. 다른 쪽 분쟁 당사국은 그러한 서면 의견의 접수 후 10일 내에 그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진다.

비밀유지

각 분쟁 당사국은 절차와 다른 쪽 분쟁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그 분쟁 당사국이 중재패널에 제출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일방적 접촉

1. 중재패널은 다른 쪽 분쟁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쪽 분쟁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
2. 어떠한 중재인도 다른 중재인의 참석 없이, 어떠한 분쟁 당사국과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측면을 논의할 수 없다.

전문가의 역할

1.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중재패널의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와 기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얻은 정보와 기술적 조언은 분쟁 당사국들에 의견제시를 위하여 제출된다.
2. 전문가의 서면 보고서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기간은 요청 접수일부터 중재패널이 보고서를 접수한 날까지 정지된다.

중재패널의 판정

중재패널의 판정은 분쟁 당사국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된 정보와 절차에서 진술된 것에 비추어 초안이 작성된다.

통보

1. 분쟁 당사국 또는 중재패널은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수령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택배, 팩스, 텔레스, 전신 또는 그 접수 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 수단으로 전달한다.(전자 문서는 각 이메일 주소로 동시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 한쪽 분쟁 당사국은 다른 쪽 분쟁 당사국과 각 중재인에게 자국의 각 서면입장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3.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수정될 수 있다.

언어, 번역 및 통역

1. 각 분쟁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전달하기 전에, 자국의 서면 및 구두 입장이 어떠한 언어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른 쪽 분쟁 당사국과 중재패널에 통보한다.
2. 한쪽 분쟁 당사국은 자국의 구두입장 또는 서면입장을 다른 쪽 분쟁 당사국이 선택한 언어로 번역하도록 주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3. 이 규칙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재패널 절차는 분쟁 당사국들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언어로 수행된다.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중재패널이 사용될 언어를 결정한다. 번역 비용은 분쟁 당사국들이 동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4.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의 판정은 영어로 작성된다.

중재패널의 비용과 경비

중재패널의 경비는 그 구성원의 보수를 포함하여 분쟁 당사국들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분쟁의 각 당사국은 중재와 관련되어 발생한 자국의 법무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